



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爲한 不動産 登記(다만, 大統領令이 定하는 大都市内の 登記는 除外)

※ 登記, 登録後 1年以内に 定當한 事由없이 全部 또는 一部를 目的變更時 그 部分에 對하여는 登録稅 賦課

- 地方稅法 第127條

○土地收容 등으로 인한 代替取得 登記

- 地方稅法 第127條의 2

○信託으로 인한 財産權의 取得 및 其他 登記, 登録時

- 委託者로 부터 受託者에게 移轉하는 財産權 取得의 登記, 登録
- 法人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合併 登記
- 會社의 整理等

- 地方稅法 第128條

錄(登記, 登録日로부터 1年以内に 定當한 事由없이 目的 變更時 減免 登録稅 追徵)

○農協, 水協, 畜協中央會

— 地方稅法 第128條의 3 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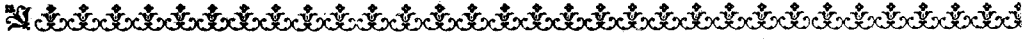
— 50% 減免對象 —

○取得稅 50%減免 對象 法人의 登記, 登

- 세액계산
- 과세표준 : 취득당시의 가액 (실취득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)
 - 등록세율
 - ① 상속에 의한 취득 : 농지 0.3%, 기타 0.8%
 - ② 무상취득 : 부동산의 1.5%
 - ③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소유권 취득 : 부동산의 0.8%
 - ④ 기타 취득 : 농지 1.0%, 기타 3%
 - ⑤ 소유권보존등기 : 0.8%
 - ⑥ 가등기 : 0.2%

○ 林業分野 主要稅制上 支援內容 (要約)

惠澤	對 象	根 據
所得稅免除 (法人: 法人稅)	조립후 5년 이상인 林木 - 영림계획, 지정개발사업 - 채종림, 보안림, 천연보호림 ※ 산림소득특별공제 150만원	조감법 제38조
讓渡所得稅免除 (法人: 特別附加稅)	조립후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 林地 - '86. 12. 31 현재 소유자가 '91. 12. 31까지 양도 (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) - 보전임지중 영림계획, 지정개발지 - 채종림, 보안림, 천연보호림	조감법 제67조의 6
	○법인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○법인이 소유임야의 交換, 분습으로 발생한 소득	법인세법 제59조의 3
相續稅控除	조립후 5년 이상인 林地(9만평 이내), 林木 (공제한도 없음) - 보전임지중 영림계획, 指定開發地 - 채종림, 보안림, 천연보호림 ※ 공제한도액 : 1억 5천만원	상속세법 제11조의 3, 4



惠 澤	對 象	根 據
贈與稅免除	조립후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 林地 - '86. 12. 31 현재 소유자가 '91. 12. 31까지 증여 (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) - 보전임지중 영림계획, 指定開發地 - 채종림, 보안림, 천연보호림 ※ 영농 1자녀에게 증여시도 면제 (증여일 현재 2년이상 직접 영농자)	조감법 제67조의 7, 8
土地超過利得稅 免 除	<개 인> ○ 사찰림, 동유림,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 ○ 보안림, 채종림, 시험림, 천연보호림 ○ 보전임지중 영림계획, 特殊開發地 <법 인> ○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-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사업지 ※ 산업비림용 임야중 최소기준면적('89. 12. 31 이전 취득)	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부칙 제4조
綜合土地稅 (地方稅)	<면 제> ○ 사찰림, 동유림,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 ○ 자연보존지구내 임야 ○ 채종림, 보안림, 시험림, 천연보호림 <분리과세> ○ 보전임지중 영림계획, 特殊開發地 ○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 ○ 자연환경지구내 임야 ○ 종중임야('90. 5. 31 以前 取得)	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

〈회원만 보세요〉

회비는 10월까지 모두 납입하여 주세요.

계좌번호

○ 농협중앙회 : 031-01-231375

한국독립가협회

○ 국민은행 : 827-01-0037-647

권 오 진

※ 온라인으로 입금시에는 송금자 성함을 명기하십시오.